

다) 휴직자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30일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 됨. 이 경우 복직 발령일 전일까지는 「교육공무원법」 제45조의 휴직기간으로 봄

#### 7) 기타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1) 경력평정: 100% 산입

(2) 호봉승급: 100% 산입

나)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다) 보수

(1) 봉급: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2) 수당: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 타. 자율연수휴직

1)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2호

#### 2) 휴직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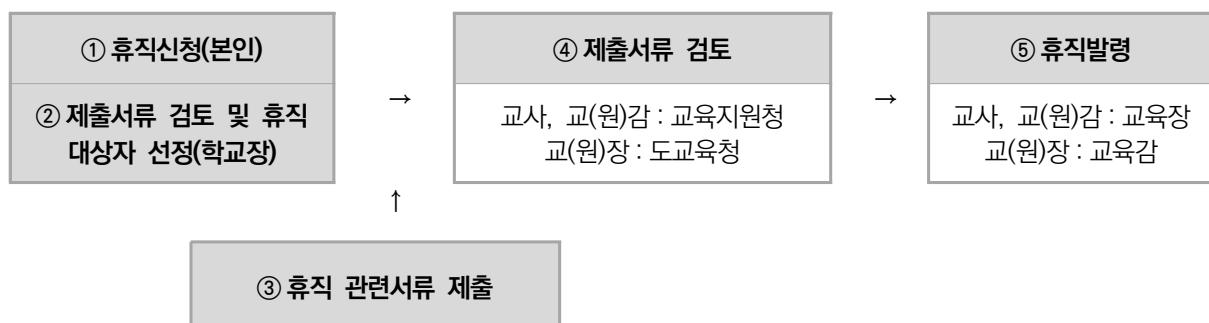
가)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이 필요한 때

나) 교원이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할 때

#### 3) 휴직의 요건

가) 휴직 대상: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

나) 휴직절차: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장(소속기관장)이 추천하여 임용권자(교사, 교감: 교육장, 교장: 교육감)가 허가



다) 유의사항

(1)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실시

(2) 자율연수휴직의 허가는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휴직 대상자를 결정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추천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사를 통해 휴직여부의 허가를 결정할 수 있음